

1. 의결주문
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 전문적·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21686호, 2026.5.26. 공포) 됨에 따라 학교 운영, 입학 방법,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(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)

- 1)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·이전·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(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)
- 2)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(안 제8조)
- 3) 출연금의 결정 절차, 지급 규정, 잉여금 처리(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)
- 4)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, 국가 재정지원(안 제14조, 안 제15조)
- 5) 사업계획서 제출, 결산 보고 사항 등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나. 학생 선발 및 지원(제19조부터 제25조까지)

- 1) 학생정원, 입학자격, 입학방법 등(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)
- 2)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(안 제22조)
- 3) 학비등의 지원내역, 지원 중단 사유, 반환 규정(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)

다.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(안 제26조)

라.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2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등기)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「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
4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5. 대표권에 관한 사항
6. 공고의 방법
7. 자산의 총액

제3조(이전등기)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

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.

제4조(변경등기)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(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.

제5조(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)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: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관
2.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: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3.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
제6조(등기기간의 기산)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(起算)을 기산한다.

제7조(결격사유)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2.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

3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
제8조(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때 교원, 직원,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.

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(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동문 등을 포함한다)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·위촉, 평의원회의 회의,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(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1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

3.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(計上)해야 한다.

제10조(출연금의 결정 통보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.

제11조(출연금의 지급·관리 및 사용)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계정(計定)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.

제12조(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)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

한다)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은 “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”으로 본다.

제13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국유재산,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양여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·물품의 관리청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간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4조(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)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

가. 차입금액,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

나.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

다. 이사회 회의록 사본

2.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

가. 학교채 발행한도액,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

나.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

제15조(국가의 재정 지원) ① 국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

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, 경상적 경비, 시설확충비 및 지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해야 한다.

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(이하 “보건의료인력”이라 한다)으로서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(이하 “공공보건의료”라 한다)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양성에 관한 사업

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·훈련 사업
가. 보건의료인력

나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
다.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·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

라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

3. 공공보건의료 분야 교육·연구 기반 확충 사업

4. 공공보건의료 분야 시설·장비 구축 사업

5. 보건의료인력 정책 연구 및 지원 사업

6. 공공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사업

7. 법 제31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사업

8.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예산 요구, 지급,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출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사업계획서)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, 방침,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.

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1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.

제17조(결산보고 등) 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
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입·세출결산서의 해당 검사를 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
4. 세입·세출결산서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
5.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
②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(補填)에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.

제18조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(이하 “양성평등조치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별 교원의 계열별 재직 목표비율
2. 성별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
3.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.

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9조(학생정원 등) ① 총장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수요 전

망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을 조정·책정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(단,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제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에 한한다.)을 조정·책정할 경우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정원을 조정·책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·책정한 학생정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학칙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의 조정·책정, 제3항에 따른 보고, 제4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0조(입학자격)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대학 졸업자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받거나 이를 수여받을 예정인 사람
2.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제21조(입학방법) ① 법 제27조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·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한다.

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(이하 “입학전형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.

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22조(학사위원회) ① 총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학사위원회(이하 “학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학칙으로 정한다.

제23조(학비등의 지원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

원이 선발된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(이하 “학비등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
2. 교재비 및 실습비
3. 주거비(기숙사비를 포함한다)
4. 공공보건의료 학업장려비
5.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
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, 지급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4조(학비등의 지원 중단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휴학하는 경우
2. 유급되는 경우
3. 정학 등 「고등교육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학사위원회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,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5조(학비등의 반환) ① 총장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

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(이하 “반환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.

② 총장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망한 경우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
3.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④ 총장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.

$$\text{감면금액} = \text{반환금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한 개월수}}{180}$$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,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6조(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기관을 통보받고 그 통보에 따라 배치된 의무복무기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② 그 밖에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) 보고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9조 제1항	100	150	200
		200	200	200
나.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2항	100	300	500
다.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49조 제2항	500	500	500